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Education for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의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안내하고자 제작되었으며 2023년도 교육 운영 시에 활용합니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용어의 혼용으로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축약하여 본 지침서에는 작성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동일한 교육을 말합니다.)

CONTENTS

▶▶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2022년-2023년 제도 주요 사항 비교	4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주요 안내사항(요약)	5
제1장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9
1. 관련 근거 및 목적, 연혁	11
2. 추진 체계	13
3. 교육 실시	13
4. 법적 주요 내용	14
5.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15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17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19
2. 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실적배점표)	26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	29
4. 후속 조치	42
5. 기타사항	44
제3장 장애인식개선교육 Q&A	47
1. 교육 대상	49
2. 일반 사항	51
3. 교육 방법 등	53
제4장 참고자료	57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현황	59
2.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확인 방법	63
3. 외부 원격 교육센터 안내	64
4. 표준(정규) 교육 자료 안내	68
5.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안내	69
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70
7. 각종 서식	76
8. 장애인식개선교육 브랜드·캐릭터	83
9.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기준표(요약)	84



2022년-2023년 제도 주요 사항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교육참여	• 기관장·소속 직원·학생(원생) 대상	• 변동 없음
교육결과 제출주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 및 각 급 학교 등 기관별로 제출(그 외 기관 유형별 보고 또는 제출주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읍·면·동, 보건소 단위는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실적 보고 - 병설유치원·분교·부설 등 본교 외 하위 기관은 본교에서 취합하여 실적 보고	• 변동 없음
실적 보고 기한	• 차년도 2월 말일(2023년 2월 28일) - 2022년 9월 1일부터 실적 입력 가능 - 단,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시·군·구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 대상인 시·군·구의 경우,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적 입력	• 차년도 2월 말일(2024년 2월 29일) - 2023년 9월 1일부터 실적 입력 가능
교육강사 및 교육기관	• 강사, 기관의 제한 없음 - 단, 위촉한 전문강사 또는 지정받은 교육기관 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평가점수 (실적배점)가 달라짐	• 변동 없음
교육자료	• 교육 질 표준화를 위한 표준 교육자료 개발 • 교육 시 활용 할 수 있는 추천콘텐츠 재정비 및 활용 매뉴얼 개발	• 교육 질 표준화를 위한 표준 교육자료 및 추천 콘텐츠 활용 매뉴얼 제공
교육방법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화상 교육인 줌(ZOOM) 등으로의 교육 권장 -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교육 권장하며 직접 대면교육 시, 적정 인원 분배하여 실시	•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줌 교육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 직군이나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실시 - 2023년 6월 부진기관 선정 - 2023년 7월~9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2023년 10월 이후 언론 등 공표	•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실시 - 2024년 6월 부진기관 선정 - 2024년 7월~9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2023년 10월 이후 언론 등 공표
부진기관 기준	• 부진기관 기준 제시 - 실적 미제출 - 실적배점표 배점 70점 미만	• 부진기관 기준 추가 - 실적 미제출 - 실적배점표 배점 70점 미만 - 대면 교육 미실시
시스템 안내	•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 변동 없음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주요 안내사항(요약)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방법 및 대상

○ (대면 교육 필수 실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교육 실시
- 2023년도부터 대면 교육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진기관으로 통보

대면 교육 기준

- (정의) 강사와 교육 대상자 상호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zoom을 활용한 교육까지를 포함(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방법) 직군이나 인원에 상관없이 기관별 상황에 맞추어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적정인원으로 분배하여 대면 교육 실시(신입직원 대상, 고위직 대상, 인사담당자 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
- ※ 단, 녹화영상을 틀고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인정 불가하며 모든 교육에 있어 참여인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교육 인정.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을 실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면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기관장 및 소속 직원, 학생 및 유아

- 소속 직원: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모두 해당. 다만, 만 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가능(자율)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제출 안내

○ (소속·하위기관 안내 협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 기간에 대하여 상위기관에서는 소속·하위기관 전달 필요
- 실적 제출 관련 안내 공문, 본 지침서 등이 보건복지부(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최하위 기관까지 개별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없기에 상위기관에서는 소속·하위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히 안내 사항 전달 협조 필요
- (제출 기간) 2023. 9. 1. ~ 2024. 2. 29.

③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 (교육 실시 결과 점검)

-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관별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배점표’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 점검
- (점검 항목) 교육 기본계획 수립 여부,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및 활용, 적합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내용

○ (증빙자료 등 추가 보완 협조)

- 점검 항목별 확인을 위하여, 교육 참여인원 명단, 개별 수료증,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오류에 대한 보완 서류 등을 요청하오니 필히 보완 기간 내에 제출 협조 필요

④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

○ (후속 조치 실시)

- ‘실적배점표’에 따른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 마련
- (조치 내용) 부진기관 선정(통보)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

○ (부진기관 선정) 2023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 부진기관 선정 및 통보

○ (관리자 특별교육)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언론 등 공표) 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

○ (각종 평가반영) 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 경영실적 평가,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 실시 기관·단체에 요구

후속 조치 안내

• (기준)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 2024년 후속 조치

부진기관 선정(2024년 6월)	관리자 특별교육(2024년 7월~9월)	언론 등 공표(2024년 10월 이후)
○ 2023년 교육 실적 미제출 ○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 대면 교육 미실시	부진기관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미 참여) 기관

※ 부진 기관 및 공표 기준 관련하여,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5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교육기관 안내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활용)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양질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전문강사 현황) 2023년 1월 기준 총 147명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의무 대상기관이 원활하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식개선교육기관 현황) 2023년 1월 기준 총 22개소

6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활용

○ (정보시스템별 기능)

- 각각의 기능별로 구현된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분	주요 기능	비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이하, 실적관리시스템)	• 매년 실시된 교육 실적의 보고 및 조회 • 장애인식개선교육 연계 지원(교육 신청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강사 정보 조회	www.able-edu.or.kr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이하, 이러닝센터)	•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원격센터 운영 • 표준(정규) 교육자료 영상 수강 가능	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강사 정보 관리	교육기관, 강사만 접속 가능

○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
- (입력 방법)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실적 입력 매뉴얼에 따라, 실적 제출(입력). 기관유형별로 매뉴얼 확인하여, 올바른 교육 실적 입력 요망

제1장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
1. 관련 근거 및 목적, 연혁
 2. 추진 체계
 3. 교육 실시
 4. 법적 주요 내용
 5.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

제1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1 관련 근거 및 목적, 연혁

1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5

2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3 연혁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규정
- (2015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16.6.30. 시행)
 - 교육 의무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
 -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명시

- (2017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오픈
 - 교육 실적 입력 및 관리, 강사 찾기 등의 기능 탑재
- (2019년)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오픈
 -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가능
- (201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1.6.4. 시행)
 -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점검 결과 교육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전문강사제 도입, 점검 결과의 각종 평가 반영 등
 - ※ 개정 사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제도 도입
- (2020년) 원격 교육 운영사이트 확대
 - (기존)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확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등
- (202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6.4. 시행)
 -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방법, 특별교육 실시 기준, 언론공표 방법, 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 ※ 개정 사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정의 마련
- (2021년 12월) 장애공감주간 운영 신규
 -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이해와 공감, 상호존중의 기회 확산
- (2021년 12월 21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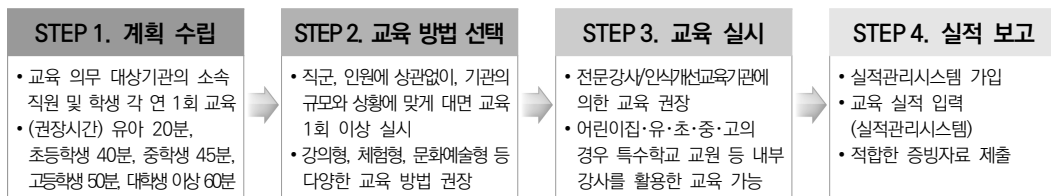
- (2021년 12월 30일)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규**
 -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를 통하여 지정한 기관(14개소 지정)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신규**
 - 교육 기본계획 수립 여부,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및 활용 등에 대한 실적 점검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2023년 1월 4일)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8개소 추가, 현재 22개소 지정)

2 추진 체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역할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운영 총괄
사업전담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 수행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 지원 •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
교육위탁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 장애인식개선교육 위탁 수행 •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강사 역량강화 등
교육의무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3 교육 실시

★ 올바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방법



4 법적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교육실시 주체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						
도입	시기	• 2007년		확대	시기	• 2016년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교육 의무대상 기관 및 교육대상		A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B유형	각 급 학교	C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 기관장 • 고위직 • 소속 직원		• 기관장 • 고위직 • 소속 직원(교사, 교직원 등) • 학생(초·중·고·대학(원)생)		• 기관장 • 소속 직원(교사, 교직원 등) • 원생(유아)		
교육 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단, 직군이나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필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대면 소통 교육 필수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 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 ※ 유아(20분)/ 초등학생(40분)/ 중학생(45분)/ 고등학생(50분)/ 대학생·성인(60분) 기준						
교육 실적 제출		•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적 입력(실적관리시스템)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시한 교육을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입력						
교육 미 이행 시		• 부진기관 선정(통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실시 등						

5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을 의미함
 - * 입법조직, 사법조직, 헌법조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조직(광역시, 시(도)·군·구, 소방서), 교육행정조직(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공공기관 기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경영하는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6개 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 2023년 10월~12월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 2023년 10월~12월에 설치된 유치원은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2023년 10월~12월에 설치된 학교는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각종학교(타법령(평생교육법,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 대학원은 제외)
 - * 2023년 10월~12월에 설치된 학교는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2. 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실적배점표)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
 4. 후속 조치
 5. 기타사항
-

제2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1 기본 개요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육 개요) 동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 의무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학교 등 6만여 개 기관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 학생 및 유아(만 3세 미만 영아는 교육 자율)

*소속 직원: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모두 해당. 다만, 만 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교육 기간) 2023.1.1. ~ 2023.12.31.까지

-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권장

- 유아(20분) / 초등학생(40분) / 중학생(45분) / 고등학생(50분) / 대학생 및 성인(60분)

○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교육 실시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교육 인원) 모든 직원(학생, 원생 포함)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 (교육 방법 및 활용)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대면에 의한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교육 방법)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 방법 자율. 직군이나 인원 규모 상관없이, 기관별 규모와 상황 등에 맞추어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

※ 단,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소속 직원·학생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교육 필수**

※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직접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인 줌(ZOOM) 등으로도 가능

대면 교육 기준

- (정의) 강사와 교육 대상자 상호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줌을 활용한 교육까지를 포함(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예시) 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만나서 하는 교육(집합교육), 강사와 양방향 소통하며 하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단, 녹화영상을 틀고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인정 불가)

- (교육 활용)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이하, 전문강사) 초빙, 표준(정규) 교육 자료

활용 또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 실시 **제2장 33페이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과 제출)** 교육 실시 후, 2023년 교육 실시 결과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제출(입력)하여야 함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결과) 입력(제출)을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실적관리 등)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이력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전용시스템

○ **(결과 점검)** 기관별 제출한 교육 실시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실적배점표’**에 의거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 실시 **제2장 26페이지**

○ **(후속 조치)** 2023년 교육 실시 결과에 따른 부진기관 통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
- 부진기관 기준에 의거,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제2장 42페이지**

○ **(결과 공표)** 2023년 교육 실시 결과(교육 이수율, 주요 교육 방법, 참여율 등)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언론 공표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1 국가기관

-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기준 하에, 3차 단위까지 분류(단, 각 부처별 보고 단위는 상이할 수 있음)

〈조회방법〉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s://www.code.go.kr> → 코드검색 → 기관코드 체크 → 한글 기관명 입력 후 조회 (차수 궁금 시 ✓차수 체크)

- (입법조직) 국회사무처(국회의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입법기관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2022년(부터) 교육대상 포함
- (사법조직) 법원, 지방법원 지원
- (헌법조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부속기관), 소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예시)

- ▶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본부 포함), 법제처 등
- ▶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
- ▶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국세청·지방관세청, 지방경찰청·지방검찰청 등
- ▶ (소속기관,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 ▶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 국가기관은 부·처·청 등의 단위로부터 3차 소속기관까지 교육실시 및 보고 대상 기관으로 관리

구 분	N차	구 분	N차
부·처·청 등 중앙기관	1차	부·처·청 등의 소속기관	2차, 3차

-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함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위 기관에 할당될 기관 단위별(1, 2, 3, 기준)로 결과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단위 기관별 개별 보고)

☞ 상위기관에서 소속기관의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현황을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시스템 회원가입 시 하위기관에서 소속상급기관을 설정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

2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한 광역 시·도, 시·군·구, 행정시로 분류

〈조회방법〉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메뉴명(업무안내) 클릭 → 하위메뉴명(지방자치군형발전실 - 지방자치제도) 클릭 → 게시물(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클릭 → 해당 첨부파일 확인 후 조회

- 읍·면·동의 실적은 시·군·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실적 제출
-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적은 시에서 일괄 취합하여 실적 제출
- ※ 읍·면·동은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이 아닌, 상위 시·군·구로 제출, 자치구가 아닌 구는 상위 시로 제출. 즉, 상위기관(시·군·구)는 하위기관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제출

- 소방청의 ‘소방청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로 분류

〈조회방법〉 소방청 <https://nfa.go.kr> → 메뉴명(정보공개) 클릭 → 하위메뉴명(주요통계) 클릭 → 게시물(소방청 통계연보) 클릭 → 해당 첨부파일 확인 후 조회

-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분류

〈조회방법〉 교육부 <https://www.moe.go.kr> → 메뉴명(정책) 클릭 → 하위메뉴명(지방교육자치) 클릭 → 게시물(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클릭 → 해당 첨부파일 확인 후 조회

3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내 ‘공공기관 지정 현황보도자료’를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조회방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 → 메뉴명(알리오 안내) 클릭 → 하위메뉴명(공공기관 현황 정보) 클릭 → 탭(공공기관 지정현황 보도자료 다운로드) 클릭 → 해당 첨부파일 확인 후 조회

- 산하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등)이 있는 경우, 중앙(본부)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교육 실적 제출

☞ 그 외 부설기관 교육도 자율 실시로, 교육 실적 제출(입력) 불필요

공공기관 실적 등록 (예시)

-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은 본원과 산하기관(강원지부, 충청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개발원은 중앙단위 기관으로서 강원지부, 충청지부의 소속된 교육 실적 또한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지방공사 및 공단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광역·기초(간접: 공사, 공단)으로 분류
 - 광역·기초(직영: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 운송)의 교육은 자율이며, 2023년 교육 실적 제출(입력) 불필요
 -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홈페이지 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의 출자·출연기관도 교육은 자율이며, 2023년 교육 실적 제출(입력) 불필요

☞ 그 외 직영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산하 협력기관 교육도 자율 실시로, 교육 실적 제출(입력) 불필요

〈조회방법〉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메뉴명(업무안내) 클릭 → 하위메뉴명(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공기업제도·운영) 클릭 → 게시물(지방공기업 현황) 클릭 → 해당 첨부파일 확인 후 조회
· 클린아이 <http://www.cleaneeye.go.kr> → 메뉴명(클린아이소개) 클릭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확인

5 특수법인

-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 기준으로 분류(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6 어린이집, 유치원

-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

〈조회방법〉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 메뉴명(보육정보공개API) 클릭 → 하위메뉴명(OPEN API) 클릭 → 게시물(어린이집 기본정보) 클릭 → 어린이집지역 선택·검색 → 해당 리스트 확인 후 검색

- (유치원) 교육부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 내 ‘일반 현황’을 기준으로 국·공립, 사립 유치원으로 분류

〈조회방법〉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메뉴명(자료실) 클릭 → 하위메뉴명(공시자료 다운로드) 클릭 → 유치원 시/도, 공시차수 선택 → 공시항목(일반현황) 선택 → 형식(excel) 다운로드 클릭 → 해당 리스트 확인 후 검색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본교)에서 병설유치원의 실적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교육 실적 제출

☞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 본교 외 하위 기관은 본교에서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해야 함

7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내 ‘학교 현황’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로 분류

〈조회방법〉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 메뉴명(알리미 소식) 클릭 → 하위메뉴명(공개용 데이터) 클릭 → 탭(학사/학생) 선택 → 학교 현황 선택 → 공시년도/학교급 선택 → 해당 리스트 다운로드 후 조회

☞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 본교 외 하 기관은 본교에서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해야 함

- (대학교 등) 교육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내 ‘학교 개황 리스트’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 대학원으로 분류(대학교, 교육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 타 법령(특별법 등)을 근거로 설치된 대학, 대학원의 교육은 자율이며, 2023년 교육 실적 제출(입력) 불필요

〈조회방법〉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메뉴명(게시판) 클릭 → 하위메뉴명(자료실) 클릭 → 게시물(학교 개황 리스트) 클릭 → 해당 첨부파일 확인 후 조회

☞ 분교, 제2~4캠퍼스 등 본교 외 하위 기관은 본교에서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해야 함

2 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실적배점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6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고위직(10)	70% 이상		10	
			60% 이상 ~ 70%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50% 미만		0	
		직원(40)	70% 이상		40	
			60% 이상 ~ 70% 미만		30	
			50% 이상 ~ 60% 미만		20	
			50% 미만		10	
	교육방법 및 활용(30) 제2장 32페이지		대면	1.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 (전문강사) 장애인개발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30
				2. 일반강사 교육		20
				3. 내부직원 교육		15
			비대면	4.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5.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2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 (ti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등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tip) 지역주민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공통 기준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 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3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에서 제외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빙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
- 장애인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바람. '전문강사'는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강사만 해당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B)〉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90)	교육 참여 (6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고위직(10)	70% 이상		10	
			60% 이상 ~ 70%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50% 미만		0	
		직원(20)	70% 이상		20	
			60% 이상 ~ 70% 미만		15	
			50% 이상 ~ 60% 미만		10	
			50% 미만		5	
		학생(20)	70% 이상		20	
			60% 이상 ~ 70% 미만		15	
			50% 이상 ~ 60% 미만		10	
			50% 미만		5	
	교육방법 및 활용(30) 제2장 32페이지		대면	1.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 (전문강사) 장애인개발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30
				2. 일반강사 교육		20
				3. 내부직원 교육		15
			비대면	4.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5.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3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 (ti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등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tip)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공통 기준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 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4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에서 제외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빙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
- 장애인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바람. '전문강사'는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강사만 해당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기관유형(C)〉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90)	교육 참여 (60)	기관장(10)	참여		10	
			미참여		0	
		직원(25)	70% 이상		25	
			60% 이상 ~ 70% 미만		20	
			50% 이상 ~ 60% 미만		15	
			50% 미만		10	
		학생(원생) (25)	70% 이상		25	
			60% 이상 ~ 70% 미만		20	
			50% 이상 ~ 60% 미만		15	
			50% 미만		10	
	교육방법 및 활용(30) 제2장 32페이지		대면	1.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 (전문강사) 장애인개발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개발원이 위촉한 강사 ** (인식개선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 교육기관		30
				2. 일반강사 교육		20
				3. 내부직원 교육		15
			비대면	4.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5.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3회 이상 교육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 (tip)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교육과정 편성 등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 (tip)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공통 기준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 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4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에서 제외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또는 교육 실시 증빙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교육 불인정
- 장애인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양성한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칭하기도 하므로,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바람. '전문강사'는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강사만 해당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

1 교육 계획 수립하기

○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점)

- (교육 계획)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을 위해 연간 교육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참고) 교육 운영 계획서 양식 제4장 76페이지

※ 참고 자료일 뿐, 기관 자체 양식 활용하여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가능

-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전년도 교육 결과 및 교육 대상자(수강생) 의견 등을 반영하면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결정할 수 있음

☑ 계획 미 수립 또는 상기 항목 미반영(0점)

교육 계획 (예시)

※ 기관별 특성 등에 맞추어 교육 계획 수립 가능

- (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 조성 등
-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등
- (일시) 2023년 4월 20일 14:00 ~ 15:00
- (대상) 신입 직원 30명
- (방법) 줌(ZOOM)을 활용한 대면(강의) 교육
- (강사) 전문강사(개선이) 초빙

2 교육 실시하기

1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2 교육 참여(60점)

-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하기에, 교육 실적 입력 시 대상별로 구분하여 입력 필수

○ (소속 직원) 직군(직급)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모두 해당. 다만,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각각의 교육 참여율이 70%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50% 미만 참여율은 최하점 부여
- (기관장 참여: 최대 10점 / 미 참여: 0점)

※ 기관장이 교육의 시작과 끝을 함께 참여하여야 함

- (고위직 참여: 최대 10점 / 50% 미만 참여: 0점)

※ 고위직 참여율이 70% 이상, 고위직이 교육의 시작과 끝을 함께 참여하여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고위직 참여 항목 제외(기관장, 직원, 학생으로만 구분)

고위직 (예시)

※ 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고위직 구분 가능

- (기준)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 단, 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고위직 구분 가능
- (예시) 부기관장, 부시장, 부교육감, 부총장, 교감,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차관, 실장, 국장 등 공무원 직급 5급 이상), 사무국장, 사무과장, 임원급, 전임교원, 부서장 등

기관유형	고위직 분류 (예시)
국가기관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예 : 차관, 실장, 국장, 정책관) (국회) 국회의원, 차장, 실장, 국장, 관장 등 (법원) 부장판사, 판사,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검찰) 부장검사, 검사,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경찰) 경정, 총경 등 (군대)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등
지자체	(광역) 부시장·부지사, 실장, 국장 등 (기초) 부시장·부군수, 실장, 국장, 과장 등
교육청	(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등 (교육지원청) 국장, 과장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부기관장, 본부장, 임원급(예: 실장, 부장 등)
초·중·고교, 대학교	교감, 부기관장(부총장), 부장교사, 실장, 처장, 전임교원(교수진) 등

☑ 기관장 교육 미 참여(0점)

☑ 고위직 50% 미만 교육 참여(0점)

- (소속 직원 참여: 최소 5점 ~ 최대 40점 / 기관유형별로 배점 상이함)

※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 등의 참여율이 70%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학생·유아 참여: 최소 5점 ~ 최대 25점 / 기관유형별로 배점 상이함)

※ 학생(유아 포함) 참여율이 70% 이상으로, 연 1회 유아(20분) / 초등학교(40분) / 중학교(45분) / 고등학교(50분) / 대학생(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만 3세 미만 영아는 교육 자율 실시(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 미만 영아만 제외하고 기관장, 직원 모두 교육 실시)

☑ 기관 전체 참여인원 및 증빙자료 확인 불가 시 교육 불인정

3 교육 방법 결정하기

1 교육 방법 결정하기

○ 기관별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 방법 자율 운영

- 단,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소속 직원·학생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 불인정

☑ (주의) 일부 교육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하여 무료교육 제공 등 교육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 발생. 가급적 본 안내서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교육 실시(필수)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사와 교육 대상자(수강생) 상호 간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 교육으로 1회 이상 실시(필수)
 ☑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30점) > 일반강사 교육(20점) > 내부직원 /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15점) > 일반 자료 활용 교육(10점)

대면 교육 기준

- (정의) 강사와 교육 대상자 상호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zoom을 활용한 교육까지를 포함(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방법) 직군이나 인원 수에 상관없이 기관별 상황에 맞추어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적정인원으로 분배하여 대면 교육 실시(신입직원 대상, 고위직 대상, 인사담당자 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
- ※ 단, 녹화영상을 틀고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인정 불가하며 모든 교육에 있어 참여인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교육 인정.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을 실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면 교육 실시

② 교육 방법 및 활용(30점)

- 전문강사 초빙, 표준(정규) 교육자료 활용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 실시
-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실시한 경우, 보다 높은 배점의 교육 방법을 기관 대표 교육 방법으로 인정

교육 방법 및 활용

유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			10
교육 실시(90)	교육 참여(60)			60
	교육 방법 및 활용(30)	대면 (강사를 통한 소통 교육)	①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30
			② 일반강사 교육	20
			③ 내부직원 교육	15
		비대면 (단순 시청각 교육)	④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⑤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

교육 방법 및 활용 점수 (예시)

- (교육 실시 횟수) 3회
- (교육 세부 내용)

차수	일자	인원	교육 방법 및 활용	교육 내용	배점
1	2023. 4. 20.	1,000명	내부직원 교육(집합대면교육)	장애이해드라마 시청	15
2	2023. 4. 21.	10명	일반 자료 활용 교육 (온라인 영상 시청)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영상 시청	10
3	2023. 12. 3.	1명	전문강사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30

- (교육 방법 및 활용 최종 점수) 30점

※ 교육 참여인원 수에 상관없이 교육 방법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방법 중 높은 배점의 점수로 최종 인정

○ ① 전문강사 또는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30점

-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전문강사**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의한 **대면 양방향 소통 교육**
 - ▶ **(전문강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애인개발원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에 의한 교육

전문강사 확인

- 전문강사 조회: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전문강사 찾기
- 전문강사 찾기 목록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게시판(이용안내-공지사항)에서 개별 강사정보 및 사진, 참고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섭외 희망 시 게재된 E-mail 또는 연락처로 직접 섭외 가능(강의비 등 강사와 직접 협의)
- ☑ **(주의)** 섭외 목적 외에 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강사정보(E-mail, 연락처)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을 금지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처벌 가능
- ☑ **(주의)** 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전문강사인지 유무는 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 ☑ 현재 2023년 1월 기준 전문강사 총 147명

- ▶ **(인식개선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의 소속강사에 의한 교육

인식개선교육기관 확인

- 보건복지부가 지정·위탁한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으로, 관련 기관 정보(강사 정보)는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게시판(이용안내-공지사항) 등에서 확인 가능
- ☑ 현재 2023년 1월 기준 인식개선교육기관 총 22개소

- (그 외 전문강사에 준하는 강사: 30점)

- ▶ **(특별위촉)** 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강의를 실시한 강사진 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기본교재 작성위원회에 의한 교육

특별위촉 강사 확인

- 특별위촉 강사 정보는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내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서 확인 가능

- ▶ **(어린이집·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어린이집 및 유·초·중·고 학생(원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또는 특수학교 교원이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인 어린이집·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또는 특수학교 교원이 학생(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인정)
- ▶ **(대학교(대학원) 장애분야 교원 등)**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장애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교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교육 대상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는 책임자 포함),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기관의 장 (대표 또는 최종책임자)에 의한 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해당 소속 대학교(원)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인정)
- **(그 외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준하는 기관: 30점)**
 - ▶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연, 연극 등 문화예술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의한 교육

수행기관 확인

-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에 의한 공연형, 문화향유형 교육으로, 관련 기관 정보는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 공지사항 게시판(이용안내-공지사항) 등에서 확인 가능

교육 방법 (예시)

전문강사 또는 인식개선교육기관, 그에 준하는 강사/기관을 활용한 대면에 의한 집합 교육 또는 줌(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교육, 공연형 교육 등

※ 대면 교육(집합 교육 외 실시간 화상 교육도 포함) 1회 이상 실시 필수. 실시간 화상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 강의 시청이 아닌 강사와 교육 대상자(수강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② 일반강사 활용 교육: 20점

- 전문강사 또는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가 아닌 **모든 외부강사***에 의한 대면 양방향 소통 교육
 - *외부강사: 전문강사 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소속강사), 교육을 받으려는 기관의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의 모든 강사**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교육 내용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올바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외부(일반)강사 섭외 시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인지를 사전에 교육 담당자가 확인하고 교육 운영 필요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 사전에 외부강사에게 받은 교육 자료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교육 담당자 확인 필요

교육 방법 (예시)

외부강사를 활용한 대면에 의한 집합 교육 또는 줌(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교육 등

- ※ 대면 교육(집합 교육 외 실시간 화상 교육도 포함) 1회 이상 실시 필수. 실시간 화상 교육에 있어서는 단순 강의 시청이 아닌 강사와 교육 대상자(수강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 외부강사가 나오는 단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등의 교육은 해당하지 않음(해당 교육은 일반 자료 활용 교육에 해당함). 강의 영상 사전 녹화를 통한 외부강사의 교육 시청은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단순 시청각 교육에 해당함

③ 내부직원 활용 교육: 15점

- 기관의 내부직원*에 의한 대면 양방향 소통 교육

*단, 내부직원의 단순 문서 배포·게시, 내부직원이 전달한 단순 영상 시청 등의 교육이 아닌 **교육 대상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는 내부직원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어야 함

교육 활용 콘텐츠 (예시)

- 기관의 내부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표준(정규) 교육 자료, 추천콘텐츠 등을 강의 시 일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실시한 교육

구분		내용
표준 (정규) 교육 자료	추천 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선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추천콘텐츠를 활용하여 내부직원이 교육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시한 교육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실 > 추천콘텐츠 ※ 교육대상별, 기관유형별로 다양한 교육 추천콘텐츠 검색하여 활용 가능 ※ 단, 단순 추천콘텐츠 시청이 아닌 내부직원이 추천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교육을 말함
	표준 콘텐츠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표준(정규) 교육 자료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내부직원이 교육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시한 교육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실 > 추천콘텐츠 > 표준콘텐츠명 검색 ※ 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교육자료 > 탭(인식개선) 클릭 > 표준콘텐츠명 검색 8종 표준 콘텐츠 ① 인식의 새로고침 ② 인식의 길라잡이 ③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④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⑤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⑥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⑦ 상상음악대 ⑧ 너와 나를 위한 콘서트 ※ 상기 콘텐츠명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구분		내용
표준 (정규) 교육 자료	장애 이해 교육 콘텐츠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른 '장애이해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개발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내부직원이 교육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시한 교육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https://www.nise.go.kr/main.do?s=eduable > 장애공감 > 장애공감 추천자료, 콘텐츠 (예시: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교육드라마 등)
일반 자료		추천콘텐츠, 표준(정규) 교육 자료 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내부직원이 교육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시한 교육

④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점

- 강사를 통한 양방향 소통이 있는 교육(①~③에 의한 강사 활용 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표준(정규) 교육 자료를 시청한 교육. 단, 교육 수강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교육 인정

표준(정규) 교육 자료 (예시)

구분	내용
추천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선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추천콘텐츠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실 > 추천콘텐츠
8종 표준콘텐츠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제작 교육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표준(정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① 인식의 새로고침 ② 인식의 길라잡이 ③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④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⑤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⑥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⑦ 상상음악대 ⑧ 너와 나를 위한 콘서트 ☑ 2023년 표준콘텐츠 총 8종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교육부 제작 교육자료)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른 '장애이해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개발한 해당 콘텐츠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https://www.nise.go.kr/main.do?s=eduable > 장애공감 > 장애공감 추천자료, 콘텐츠 (예시: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교육드라마 등)

교육 방법 (예시)

기관 소속 내부직원이 추천콘텐츠, 표준(정규)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였거나 교육 대상별로 각자 강의를 시청·수강한 교육 등

- ※ 단, 개별로 강의를 시청·수강한 경우 교육 수강여부 확인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면 교육(집합 교육 외 실시간 화상 교육도 포함) 1회 이상 실시 필수. 실시간 화상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 강의 시청이 아닌 강사와 교육 대상자(수강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⑤ 일반 자료 활용 교육: 10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한 교육.
단, 교육 수강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교육 인정

일반 교육 자료 (예시)

구분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고용노동부 제작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콘텐츠
그 외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자료	추천콘텐츠, 표준(정규) 교육 자료 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

- ☑ 교육 미실시 및 증빙자료 확인 불가, 금융상품 연계 교육 실시(0점)
- ☑ (주의) 실적 입력 시, 금융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한 무료 교육 실시 여부 문항에 '예'를 선택한 경우 교육 불인정(0점)

교육 방법 (예시)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콘텐츠 등을 단순 시청한 교육

※ 단, 교육 수강여부 확인 등이 가능하여야 함. 교육 참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불인정

③ 교육 콘텐츠 확인 방법 안내

구분	내용
추천콘텐츠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실 > 추천콘텐츠
표준콘텐츠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교육자료실 > 추천콘텐츠 > 표준콘텐츠명 검색 ☑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교육자료 > 탭(인식개선) 클릭 > 표준콘텐츠명 검색 ☑이러닝센터 www.able-edu.or.kr/elearning > 교육신청 > 표준과정 ☑외부 원격 교육 센터(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등) > 표준콘텐츠명 검색 ☑장애인개발원 유튜브(코디티비) 채널 > 표준콘텐츠명 검색 ※ 단, 단순 영상 시청은 교육 불인정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4 가점 사항(10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5점)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관 내 특성에 맞게 교육 방법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단,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 ①~③이 1회 이상 포함 시 가점 인정)

★ (부진기관 제외) 기관유형 A는 3회 이상, 기관유형 B, C는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이라도 부진기관에서 제외. 단, 대면 교육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인 ①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② 일반강사 교육, ③ 내부직원 교육 중 1회 이상 실시하고 ④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⑤ 일반 자료 활용 교육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추가 실시 가점 인정. 즉, ①~③이 아닌 ④~⑤ 비대면 교육만 다양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가점 인정 불가

☑ (주의) 실적 입력 시, 교육 실적을 교육 대상, 교육 방법별로 구분하여 수차례 입력 요망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

-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인정(비대면 교육인 자료 활용 교육만으로는 불인정)

구분	내용	가점
기관유형 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 2회 이상 실시 ☑ 2개 이상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한 경우	5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3회 이상 실시 ☑ 2개 이상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한 경우	5점 + 부진기관 제외
기관유형 B, C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 3회 이상 실시 ☑ 2개 이상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한 경우	5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4회 이상 실시 ☑ 2개 이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한 경우	5점 + 부진기관 제외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2점)

-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또는 규정, 학칙, 교육과정 편성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항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2점)

- 장애당사자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 교육 의무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1점)

- 기관 소속 직원 외에 별도로 학부모, 지역주민 등 미소속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단순 문서 배포·게시·전달 등은 불인정)

☑ 가점 적용에 있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5점) 항목은 자동 점수 적용되므로 실적 입력 시 참고 바람

4 교육 결과 제출

○ (제출 방법) 실적관리시스템 기관 회원 가입 후, 실적 입력(제출)

- (미가입기관)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기관가입 > 로그인 > 실적입력

※ 회원가입 후 가입 승인(개발원)이 필요하며, 승인은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

- (가입기관)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로그인 > 실적입력

○ (입력 내용) 교육 실시 날짜, 시간, 교육 대상 및 참여인원,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사 성명 및 소속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교육 실적은 연 1회 총괄 입력이 아닌, 수시로 여러 건 입력 가능하나 실적 입력 기간 내에 그 간 실적을 입력하여야 함(교육 방법 등 구분에 따라 다수 입력 가능)

☑ (주의) 실적 입력 시, 증빙자료로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의 경우,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참여 여부가 확실히 확인되어야 함

※ (필수항목) 교육 실시 날짜, 강사 성명, 강의명(콘텐츠명), 교육 참여인원(이름, 직급, 소속, 서명)

※ 참여인원 명단(서명부 등) 별도로 자체 보관 필수. 결과 점검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제출하여야 함

☞ 교육 증빙자료 양식

※ 단,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원생) 대상 교육에 한해 교육계획서로 갈음하여 결과 보고 가능(학생의 경우,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갈음 가능하나 교직원 등 성인의 경우 별도의 계획서가 아닌 참여인원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부적합한 결과 보고 (예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관 전체 대상인원(모수) 확인 불가, 교육별 참여인원 확인 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인원이 상이한 경우
- 기관장 참여여부, 고위직 참여율 등의 증빙자료 확인 불가
- 참여율 확인 불가한 증빙자료, 강의명(콘텐츠명) 확인 불가한 증빙자료 등

- (입력 주체) 개별 기관별 담당자가 당해 연도 교육 실적을 직접 입력하여야 함
 -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취합 후 일괄 실적 보고
 - 분교, 부설 등 본교 외 하위 기관은 본교에서 취합 후 일괄 실적 보고
- (제출 기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상시 제출(입력) 가능

5 교육 평가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감수성 및 장애이해 제고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권장)
 -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는 한편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환류
 - ☞ 교육 만족도, 효과 조사지 양식

※ 교육 방법 및 활용(요약)

- (기준)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보다 높은 배점의 교육 방법을 기관 대표 교육 방법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점 배점 안에서 적용

구분	세부 내용	배점
①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①-1.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①-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소속강사 ①-3.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특별위촉한 강사 ①-4. 어린이집·유·초·중·고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 ①-5. 대학교(대학원) 장애분야 교원 ①-6.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30
② 일반강사 교육	②-1. 전문강사가 아닌 외부강사 ②-2.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소속강사가 아닌 외부강사	20
③ 내부직원 교육	③-1. 교육 의무 대상기관 소속 내부직원	15
④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④-1. 전문 심사단이 선정한 추천콘텐츠 ④-2.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표준콘텐츠 ④-3. 교육부에서 제작한 장애공감 콘텐츠	15
⑤ 일반 자료 활용 교육	⑤-1. 타 기관에서 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10

교육 방법 및 활용 점수 (예시)

- ※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실시한 경우, 보다 높은 배점의 교육 방법을 기관 대표 교육 방법으로 인정
- 어린이집 특수교사가 동 어린이집 원생 대상으로 집합 교육 1회: 30점
 - 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표준콘텐츠를 일부 활용하여, 전문강사가 줌 실시간 교육 2회: 30점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가 추천콘텐츠를 일부 활용한 집합 교육 1회: 30점
 - 전문강사가 일반 자료와 추천콘텐츠를 활용한 줌 실시간 교육 2회: 30점
 -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동 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교육 2회, 교직원 대상 표준콘텐츠 활용한 교육 1회: 30점
 - 장애인개발원장이 특별위촉한 강사가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줌 교육 1회: 30점
 -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이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문화향유형 프로그램 교육 1회: 30점
 -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동 초등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 1회, 외부강사가 학생 대상으로 집합 교육 1회: 20점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소속강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추천콘텐츠를 활용한 집합 교육 1회: 20점
 - 기관의 내부직원이 일반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2회: 15점
 - 대학교 학생이 표준콘텐츠를 장애인식개선 이력센터를 통하여 시청한 교육 1회: 15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외부 원격 교육센터에 올라온 표준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수강한 경우: 15점
 - 어린이집 특수교사가 동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집합 교육 1회: 15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외부 원격 교육센터에 올라온 표준콘텐츠가 아닌 장애인식개선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경우: 10점
 - 직원이 타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강사의 온라인 교육 영상을 수강한 경우: 10점

4 후속 조치

○ (교육실적 점검)

- 제출한 2023년 교육 실적에 대한 서면자료(증빙자료)나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교육 기본계획 수립 여부,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및 활용, 기타(교육 제도화, 장애당사자 강사 교육 실시 여부, 교육 대상기관 미소속자 추가 교육 실시 여부 등)
- ★ (주요 점검내용) 교육 기본계획 증빙자료 확인 불가(계획서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 첨부 등), 교육 참여인원 및 증빙자료 확인 불가(참여인원 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입력한 값과 다른 경우 등), 교육 방법 오입력(대면 교육·비대면교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육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 등), 강의명(콘텐츠명) 확인 불가(강의명이 없어 표준자료·일반자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등), 강사 정보 확인 불가(전문강사 여부 확인 불가 등) 등

○ (부진기관 관리)

- 2023년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인 기관, 대면 교육 미실시의 경우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기관으로 통보(2024년 6월 예정)
- ★ (부진기관 제외) 기관유형 A는 3회 이상, 기관유형 B, C는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이라도 부진기관에서 제외. 단, 대면 교육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부진기관의 기준은 '실적배점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변경 적용될 수도 있음
- 부진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은 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함

부진기관 유형 (예시)

구분	내용		부진기관 여부 (O, X)
공통	실적 미제출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지만, 실적관리시스템 상 입력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진기관 O
	대면 소통 교육 미실시	☑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진기관 O
기관유형 A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실적 제출 배점표 70점 미만	☑ 장애인식개선교육 2회 이상 실시	부진기관 O
		☑ 장애인식개선교육 3회 이상 실시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 1회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	부진기관 X (정상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3회 이상 실시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 실시하지 않고 3회 이상 실시)	부진기관 O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부진기관 유형 (예시)				
구분	내용			부진기관 여부 (O, X)
기관유형 B, C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실적 제출	실적 배점표 70점 미만	☑ 장애인식개선교육 3회 이상 실시	부진기관 O
			☑ 장애인식개선교육 4회 이상 실시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 1회 포함하여 4회 이상 실시)	부진기관 X (정상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4회 이상 실시 (강사를 통한 대면 소통 교육 실시하지 않고 4회 이상 실시)	부진기관 O

○ (관리자 특별교육)

- (목적) 실적배점표에 따른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마련
- 부진기관으로 통보 이후, 6개월 이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2024년 7월~9월 예정)

※ 관리자 특별교육 방법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향후 대상기관에 한해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관리자 기준 (예시)		※ 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관리자 구분 가능
• (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 명칭을 불문하고 아래의 지위에 준하는 자. 단, 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관리자 구분 가능		
기관유형	관리자 분류 (예시)	
기관유형 A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기관유형 B, C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대학교(대학원)	교감 또는 교무부장,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

○ (언론 등 공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교육 점검 결과 공표

-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미 참여) 기관일 경우, 언론 등 공표

※ 관리자 특별교육 참여 시, 해당 기관은 부진기관이긴 하나 언론 공표 대상에서는 제외. 단, 언론 공표 관련하여,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공표 기준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각종 평가반영) 각종 평가지표에 반영·요구를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점검 예정

- 자체평가, 경영실적 평가,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 실시 기관·단체에 요구

후속 조치 안내

• (기준)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 2024년 후속 조치

부진기관 선정(2024년 6월)	관리자 특별교육(2024년 7월~9월)	언론 등 공표(2024년 10월 이후)
○ 2023년 교육 실적 미제출 ○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 대면 교육 미실시	부진기관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미 참여) 기관

※ 부진 기관 및 공표 기준 관련하여,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5 기타사항

1 유의사항 안내

- (부진기관 통보 주의 필요) 2021.6.4.부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미 이행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실시* 등

*이와 관련, 교육 실적 점검을 실시하오니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 협조 요망

-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의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오니 필히 사전에 교육을 충실하게 '실적배점표'에 따라 실시 요망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적관리시스템에 미쳐 입력하지 못한 경우 실적 미제출로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오니 필히 실적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실교육 주의 필요) 일부 민간기관 등에서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할 우려가 높으니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교육 운영 권장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 불인정. 실적 입력 시, 금융상품 판촉 홍보 등의 영업과 연계한 무료 교육 실시 여부 문항에 '예'를 선택한 경우 교육 불인정으로 처리됨

- **(소속·산하기관 실적 관리 철저)** 상급기관(각 부처, 시·군·구 등)은 소속·산하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여부 관리 및 교육 독려* 요망

*교육 의무대상기관 전체에 전자공문 등이 발송되지 않거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교육 관련 내용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최상위기관에서는 소속·산하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장애인개발원이 안내하는 공문 등에 있어 전달 요망

-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 본교 외 하위 기관은 본교에서 취합 후 일괄 실적 보고
- 읍·면·동의 실적은 시·군·구에서 일괄 취합 보고하여 실적 제출
-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적은 시에서 일괄 취합 보고하여 실적 제출

- **(내실 있는 교육 운영)** 각 기관별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내실 있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 운영*

*기관 특성 또는 교육 대상 등에 따라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 다양하게 운영

2 교육 관련 허위 홍보·안내 전화 대응

- 장애인개발원의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만이 교육 의무 대상기관의 실적 제출 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 실적이 미제출 되었더라도 장애인개발원에서 개별 기관에 별도로 교육 독려 등의 연락을 하지 않음(단, 교육 실적 입력 요청 등의 연락은 전체 기관 대상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실시하고 있음)
- 민간교육업체에서 특히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을 알리고 업체의 무료 교육 이수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실적이 등록되지 않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지만 지정된 기관에게 받지 않아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등의 허위 내용 고지

- 상기와 같은 교육은 ‘무료 교육을 빙자한 보험상품 판매’ 등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관의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먼저 확인 후 대응하고 어린이집 등의 각종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등)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해당기관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교육업체의 방문을 허락하기보다는 본 「안내서」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효율적인 교육 실시 요청

(주의) 위와 같은 유사 사례의 홍보 전화로 교육을 받고 상품의 홍보를 받으신 경우 해당 업체명과 발신전화 번호, 허위 홍보·안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대표번호(☎ 1522-0495)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내 Q&A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적관리시스템 실적 입력 기간 안내

- (실적 입력 기간) 2023. 9. 1. ~ 2024. 2. 29.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에 있어, 입력 기간을 지정하여 교육 의무 대상기관이 실적 누락 없이 관리 가능하도록 집중 입력 기간 설정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제3장 장애인식개선교육 Q&A

-
1. 교육 대상
 2. 일반 사항
 3. 교육 방법 등
-

제3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Q&A

1 교육 대상

Q.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은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대학교
 - ③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 ①, ②, ③ 기관장, 소속 직원 및 학생(원생)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만 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할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교육대상 인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직원 총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교직원 및 학생 이수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원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2023. 4. 1. 기준으로 합니다.(대상 인원 산정에 있어 학생은 재학생, 교직원(소속 직원)은 직군과 상관없이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4대 보험이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교육 대상에서 제외). 대상기관별 세부 교육 대상 기준 등은 본 지침서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근로자도 없고, 장애인을 만날 일이 없는데 교육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며, 장애인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입니다. 교사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학생(유아 포함)이 있는 기관의 경우 유아, 학생 등도 교육 대상입니다. 유아에게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3세 미만 영아 자율)

Q. 영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이 교육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자율(제외 가능)이며 기관장, 교직원은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요양보호기관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자율입니다. 해당기관은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 실적 제출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취지가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장애인과 매일 함께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자율입니다. 해당기관은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 실적 제출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종에 근무 하신다고 하여도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교육 대상기관 범위에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수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취지가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임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중 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교육 대상인가요?

A. 소속 직원의 범위는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만 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영어버전 교육 자료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일반 사항

Q.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른 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교육대상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체 근로자가 교육대상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면서 동시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인 어린이집 직원과 유·초·중·고·대학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의 직원(공무원 제외)의 경우에는 각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일반 자료 활용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건복지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 급 학교의 기관장, 소속 직원 및 학생(유아 포함)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방법	전문강사, 인식개선교육기관, 일반강사, 내부직원,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교육목적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
제재규정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실시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적제출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내 교육 실적 입력(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Q. 2023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에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전까지 입력 하시면 됩니다.

Q. 학교입니다. 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교육을 차년도 2월까지 하고 실적입력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교육은 당해 연도(2023년 12월 31일까지)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실적 입력기간만 **2024년 2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이해 하셔야 합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벌칙이 없으나, 향후 교육 결과 점검에 따라 교육 미실시 기관은 부진 기관으로 통보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Q. 기관의 대표자, 주소, 상호명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 변경 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교육 실적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의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실적관리시스템 Q&A 게시판에 문의 글을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수정반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교육 실적에 대하여 이관작업 또는 신규 기관가입 등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기관가입 후, 교육 실적을 재입력해주셔야 합니다.

Q. 실적등록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적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도록 해주시고, 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을 통해 **마이페이지 > 정보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실적등록 담당자의 성명 등을 기준으로 비밀번호 찾기 및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활용바랍니다.

※ 유선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대표전화 ☎ 1522-0495)

3 교육 방법 등

Q. 교육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표준(정규) 교육 자료, 추천콘텐츠)는 현재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교육자료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아 교육 시에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장애인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표준(정규)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교육 시 활용 가능합니다.

Q. 장애인개발원에 콘텐츠 공동 활용 신청을 하여 받은 동영상 자료를 기관 시스템(LMS) 내에 탑재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어떤 교육 방법에 해당하나요?

A. 기관별 시스템에 탑재 후, 표준(정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수료증 발급 또는 증빙 자료(수강인원 명부 등)가 확인된다면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15점)으로 인정됩니다.

Q.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대면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 대면 교육은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줌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까지를 포함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대면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오니 필히 대면 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면이 아닌 줌(ZOOM)으로 실시간 소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면 어떤 교육 방법에 해당하나요?

A.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이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ZOOM) 교육의 경우, '전문강사 교육'에 해당하여 '30점'이 부여됩니다.

Q.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A.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소속강사를 통한 교육은 ‘전문강사 교육’에 해당하여 ‘30점’이 부여됩니다. 인식개선교육기관별로 연락을 하여, 전문(소속)강사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A.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통해 문화향유형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준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30점’이 부여됩니다.

Q. 타 기관에서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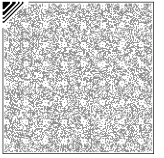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적 등록 시 환산되는 점수가 ‘실적배점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오니 보건복지부의 표준(정규) 교육 자료 활용을 권장합니다. 타 기관 교육자료 활용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의 교육 실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22년도부터 병설유치원, 분교, 분원 등은 본교에서 취합 후 실적입력을 해야 합니다. 병설유치원 실적은 본교(00초등학교) 계정으로 본교 담당자가 로그인 후 2단계 참여 인원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합산된 직원 및 학생들의 전체/참여 인원을 기입하고 3단계 교육 실적 입력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구분하여 실적을 각각 입력·저장하면 됩니다.

Q. 추천콘텐츠를 내부직원이 활용하여 전달하는 교육과 추천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A. 내부직원이 추천콘텐츠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양방향 교육을 실시한다면, ‘내부직원 교육’에 해당하여 15점이 부여됩니다. 단, 추천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알아서 교육을 듣게 한다면 ‘일반 자료 활용 교육’으로 10점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모든 교육에 있어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Q. 실적입력은 한번만 입력해도 되나요? 여러 번 입력 가능한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적입력은 원칙적으로는 교육 실시마다 등록 해주셔야 하며, 누적으로 관리됨으로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교육대상의 연령이 성인이고, 전 교육대상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 모두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적입력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합산 보고가 가능하지만 3단계 교육 실적 입력 시에는 교육회차(날짜)별로 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별로 구분하여 여러 건으로 입력하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실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입력 가능합니다.

- 성인 10명(원격교육), 학생 20명(전문강사 교육)인 경우, 성인 10명 실적과 학생 20명 교육 실적 별도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교육 방법과 교육 대상에 따라 구분 등록 필수
- ※ 실적 중복 입력 방지를 위하여 참여 인원은 해당 실적에 맞추어 구분하여 작성 필수
- ※ 추가 실적 입력 시, 3단계 입력 화면 하단의 [교육실시방법 등록] 탭을 눌러야 추가 가능

Q. 특수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A. 특수교사가 해당 소속 학교 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전문강사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으로 해당되어 '**30점**'이 부여됩니다. 단, 특수교사가 동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으로 해당되어 '15점'이 부여됩니다.

Q. 교육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A. 증빙자료는 참석자 명단, 이수증(수료증) 명단, 교육 관련 내부기안, 결과보고서 등으로 교육일시, 직급별 참석 인원 수, 교육방법 등이 구분되어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증빙자료가 없는 교육은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육실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교육방법이 있나요?

- A.** 네.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관에서 충실하게 실시해주셨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적합한 교육 결과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히 숙지해주시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촉 연계 등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불인정 됩니다.**

부적합한 결과 보고 (예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관 전체 대상인원(모수) 확인 불가, 교육별 참여인원 확인 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인원이 상이한 경우
- 기관장 참여여부, 고위직 참여율 등의 증빙자료 확인 불가
- 참여율 확인 불가한 증빙자료 등

Q. 부진기관의 정확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 ①실적 미제출한 경우, ②실적은 제출하였으나 배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③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④실적입력 시 3단계 교육결과 보고 첨부파일 미제출 또는 증빙오류인 경우에는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부진기관 선정 (예시)

사례1) 초등학교에서 연간 4회 이상 교육을 진행했는데 왜 부진기관인가요?

- 연간 4회 이상을 하더라도 **대면 교육 1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

사례2) 저희 기관은 70점도 넘었고 대면 교육도 실시했는데 왜 부진기관인가요?

- 대면 교육을 실시하셨으나, 교육 실시에 대한 3단계 결과보고 미제출 또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에는 부진기관으로 선정

•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아닌 타 법령에 따른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단순 사진 (사업자등록증, 풍경사진 등). 오류로 인해 열람이 안 되는 파일 등

※ 부적합한 결과 보고 (예시)와 부진기관 선정 (예시)를 참고하시어, 실적입력 시 교육으로 불인정 되거나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제4장 참고자료

-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현황
 2.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확인 방법
 3. 외부 원격 교육센터 안내
 4. 표준(정규) 교육 자료 안내
 5.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안내
 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7. 각종 서식
 8. 장애인식개선교육 브랜드·캐릭터
 9.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기준표(요약)
-

제4장 ▶ 참고자료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2021년 12월 30일 지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아래 기관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실적배점표’ 상 ‘30점’ 만점 부여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홈페이지
국가 및 공공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체	• 전문강사 활용	www.able-edu.or.kr › 교육강사찾기, 공지사항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활용	www.able-edu.or.kr › 공지사항
			• 표준(정규) 교육 자료 활용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www.able-edu.or.kr/elearning › 교육신청
			- 상상음악대 - 너와 나를 위한 콘서트	www.koddi.or.kr › 자료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코디티비)
	교육부 국립특수 교육원 에듀에이블	유아~ 성인	• 교육 활용 가능 일반자료 제공 - 장애공감영상, 장애인권교육 웹툰 등	www.nise.go.kr/main.do?s=edu- able › 장애공감 › 인권교육

※ 지정번호 순

구분	인식개선교육기관명 (연락처)	주 교육대상	주 교육 활동 지역	홈페이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	보들극장 (☎ 02-6052-3334)	성인, 학생, 유아	서울, 경기	www.bodlenara.co.kr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031-203-1665)	성인, 학생, 유아	경기	www.gsrpd.org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센터 (☎ 051-506-1498)	성인, 학생, 유아	부산, 경남, 울산	www.bs-aulim.org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064-702-0295)	성인, 학생, 유아	제주	www.jejurehab.or.kr
	성남시장장애인권리증진센터 (☎ 031-725-9506)	성인, 학생, 유아	서울, 경기	sungjanin.org
	밀알복지재단 (☎ 02-3411-4664)	성인, 학생, 유아	서울, 경기	www.miral.org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053-557-0455)	성인, 학생, 유아	대구, 경북	www.dgcowalk.or.kr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32-670-1239)	성인, 학생, 유아	경기	www.pchand.or.kr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2-242-1778)	성인, 학생, 유아	울산	www.ulsanrehab.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02-796-4280)	학생, 유아	서울, 경기, 전남, 경남	www.kappd.or.kr
	장애인인권센터 (☎ 02-6123-4407)	학생, 유아	서울, 인천	www.hcdp.or.kr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1544-6669)	성인, 학생, 유아	서울, 경기, 인천	www.aulim.org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02-880-0500)	성인, 학생, 유아	서울, 경기, 인천	www.silwel.org
	창원장애인인권센터 (☎ 055-274-1332)	성인, 학생, 유아	경남	www.cwdhl.or.kr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 053-567-9981)	성인, 학생, 유아	대구, 경북	www.dapdr.or.kr
	사이영협동조합 (☎ 061-755-0787)	성인, 학생, 유아	전남, 전북	http://m.blog.naver.com/420art
	피어라꽃꽃사회적협동조합 (☎ 033-743-5340)	성인, 학생	강원	https://band.us/band/77319603

제4장 참고자료

※ 지정번호 순

구분	인식개선교육기관명 (연락처)	주 교육대상	주 교육 활동 지역	홈페이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기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 055-286-1330)	성인, 학생, 유아	경남	www.ablecall.net
	한국파랏하우스 (☎ 053-632-1107)	학생, 유아	대구	http://parohouse.co.kr.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 02-717-4336)	학생	전국	www.artwecan.or.kr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031-247-7721)	성인, 학생, 유아	서울, 경기, 인천	www.kgpdpd.or.kr
	진해장애인인권센터 (☎ 055-541-1330)	성인, 학생	경남	www.jh1330.or.kr

※ 2023년 1월 4일 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22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교육에 있어 적극 활용 바람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확인 방법

○ <https://www.able-edu.or.kr/main.do>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Able Education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chievement Management System), '교육안내' (Education Guide), '실적관리' (Achievement Management), '교육자료' (Education Materials), '강사소개' (Instructor Introduction), and '이용안내' (User Guide).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for the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방법' (2023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chievement Reporting Method) and a section for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현황'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Institution Designation Status). Below this, there is a table listing approved institutions.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1	2021-001	서울시교육청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5길 14	김수현	02-6052-3334
2	2021-002	경기도장애인복지협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0번길 5-39	홍준환	031-203-1665
3	2021-003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부산 북구 서운대로 736 국환노후복지시설 404호	계성환	051-508-1468
4	2021-00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제주 제주시 518로 3120	박정환	064-702-0295
5	2021-005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	경기 양주시 분당구 아문로 207 1층	황복현	031-725-9506
6	2021-006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4 201	최희준	02-3411-4664
7	2021-007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	대구 남구 영천로 171 대구대교도 교정동 1층	김복종	053-537-9455
8	2021-008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경기 부천시 역곡로 387	이재준	032-870-1239
9	2021-009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울산 중구 역곡로 180	조아라	052-242-1778
10	2021-010	한국장애인복지협회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 301호	남경희	02-796-4280
11	2021-011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5길 23 215호	김민호	02-8123-4407
12	2021-012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서울 구로구 소래로 130 1층	이대희	1544-0869
13	2021-013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이정민	02-890-9500
14	2021-014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	충남 청주시 상당구 동정로 37	조영호	959-247-1332

1. 홈페이지 접속
2. 이용안내 - 공지사항 클릭
3.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현황 안내' 클릭
4. 첨부파일 클릭 - 세부 정보 확인(연락처, 담당자 등)

☑ (주의)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싶으신 경우, 기관에 연락을 하시어 강의 의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부 원격 교육센터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www.able-edu.or.kr/elearning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교육신청 클릭
4.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교육학습 선택

콘텐츠명	강의 구성	주 교육대상	교육인정시간
인식의 새로고침 (영상)	•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성인	2시간
인식의 길라잡이 (영상)	•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토크쇼 • 장애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시간 • 세상 속으로 한걸음 더 • 당신에게 바라봅니다	성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등)	2시간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영상)	• 우리 학교에도 장애학생이 있다고? •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대학교 • 우리의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위하여 •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 선진국이라고? •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성인 (대학 관련 종사자 및 학생 등)	2시간

콘텐츠명	강의 구성	주 교육대상	교육인정시간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영상)	• 장애는 뭐다? 장애는 뭐다! • 장학터뷰 • Talk&Talk: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가! • Talk&Talk: 좋은 친구 제도가 꼭 필요한가!	청소년(중·고등학교 등), 성인(대국민) 대상	1시간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표준교안)	•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인의 인권 • 장애와 다양성 • 자율, 자립 • 접근권	성인	2시간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영상)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 튜브톡! 꿈꾸는 다이어리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빼고, 긍정적 인식제고를 더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할(8대 에티켓) • 장애감수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성인	2시간

2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http://e-learning.nhi.go.kr>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정규과정 클릭 4. “장애인식개선” 검색 5. 〈인식의 새로고침〉 교육학습
---	---

3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https://www.neti.go.kr/index.go>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장애인식개선” 검색
4. <인식의 길라잡이> 신청하기

※ 참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 교육 과정은 표준(정규)자료인 15점에 해당

4 (대국민) 경기도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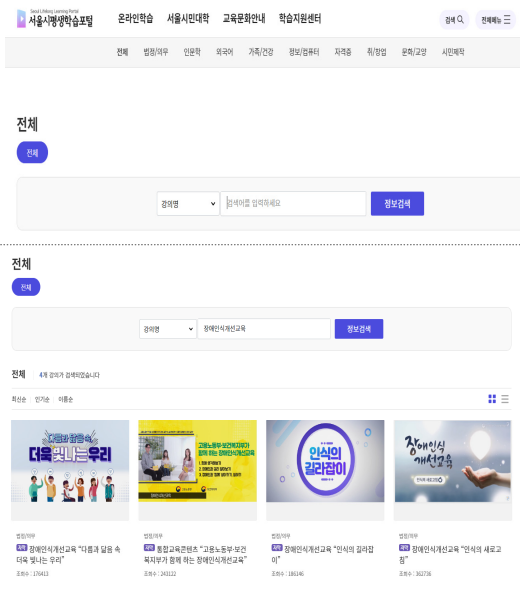
● <https://www.gseek.kr>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하기 - “장애인식개선” 검색
4.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수강신청

※ 참고: [통합교육콘텐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은 표준(정규)자료인 15점에 해당

5 (대국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https://sll.seoul.go.kr>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온라인학습 - 전체 - “장애인식개선교육” 검색
4. <다들 밝히는 우리, 인식의 길라잡이, 인식의 새로고침> 수강신청

※ 참고: 통합교육콘텐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은 표준(정규)자료인 15점에 해당

6 (대국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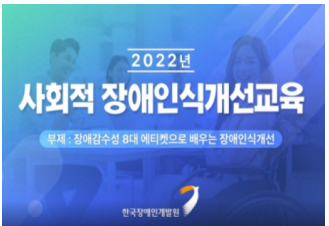
○ <https://in.kohi.or.kr/index.do>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장애인식개선” 검색
4. <인식의 길라잡이(기본, 심화)> 수강신청

4 표준(정규) 교육 자료 안내

- (표준(정규) 교육 자료)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신청 가능한 표준 교육 자료로,
- ① 인식의 새로고침, ② 인식의 길라잡이, ③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④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⑤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⑥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그 외 추가로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신청이 불가능한 표준 교육 자료로 유아 대상 콘텐츠 '⑦ 상상음악대' 또는 문화예술 콘텐츠 '⑧ 너와 나를 위한 콘서트' 영상이 이에 해당함(⑦~⑧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코디티비)에서 확인)

		
〈인식의 새로고침〉 “성인 맞춤 교육 콘텐츠”	〈인식의 길라잡이〉 “공무원, 성인 맞춤 교육 콘텐츠”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대학생, 성인 맞춤 교육 콘텐츠”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청소년, 성인 맞춤 교육 콘텐츠”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성인 맞춤 교육 콘텐츠 (표준 교안)”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성인 맞춤 교육 콘텐츠”
		* 그 외 상기 교육 콘텐츠의 영문 자료, 심화 자료, 배리어프리용 모두 표준(정규) 교육 자료 해당
〈상상음악대〉 “유아 맞춤 교육 콘텐츠”	〈너와 나를 위한 콘서트〉 “문화예술 맞춤 교육 콘텐츠”	

5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안내

○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표준(정규) 교육 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제도 운영

- (콘텐츠 공동활용) 실적관리시스템 및 이러닝센터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교육과정들의 차시별 파일(MP4)들을 신청기관의 교육 자료로서 활용(집합시청 및 LMS탑재 등)할 수 있도록 제공

※ 단, LMS탑재가 아닌 단순 영상 시청은 공동활용 신청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실적관리시스템 추천 콘텐츠 게시판, 장애인개발원 자료실, 장애인개발원 유튜브)

교육안내	실적관리	교육자료	강사소개	이용안내																						
홈 > 교육자료 > 콘텐츠공동활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동활용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자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 콘텐츠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시 법적대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 공동활용이란? 콘텐츠 공동활용을 신청하시면 종합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교육과정들의 차시별 파일(MP4)들을 신청기관의 교육자료로서 활용(집합시청 및 LMS 탑재 등)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수집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기관명, 교육담당자(성명, 연락처, E-mail)</td> <td>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및 관리</td> <td>2년</td> </tr> </tbody> </table>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이용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기관명, 교육담당자(성명, 연락처, E-mail)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및 관리	2년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기관명, 교육담당자(성명, 연락처, E-mail)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및 관리	2년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입력자</td> <td>성명</td> <td> </td> </tr> <tr> <td>전화번호</td> <td>지역번호 </td> </tr> <tr> <td>이메일</td> <td> @ 이계할 선택 ☐</td> </tr> <tr> <td colspan="3">[직접 수신여부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td> </tr> <tr> <td>활용목적</td> <td colspan="2"> ☐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td> </tr> <tr> <td>활용기간</td> <td colspan="2"> ※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2022-02-01 ~ 2022-02-01 </td> </tr> <tr> <td>공동활용 콘텐츠 (중복선택가능)</td> <td colspan="2">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인식의 길라잡이(심화버전) ☐ 다들(다들)과 함께 속 더러워지는 우리 ☐ 다들(다들)과 함께 속 더러워지는 우리 ☐ 장영(장영)을 잘 아는 우리 ※ 「교육노동법」 제 40조 제 2항 제 2호는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제공은 교육청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td> </tr> <tr> <td>기타 요청사항</td> <td colspan="2"> 기타 요청사항 기재 </td> </tr> </table>					입력자	성명		전화번호	지역번호	이메일	@ 이계할 선택 ☐	[직접 수신여부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			활용목적	☐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활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2022-02-01 ~ 2022-02-01		공동활용 콘텐츠 (중복선택가능)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인식의 길라잡이(심화버전) ☐ 다들(다들)과 함께 속 더러워지는 우리 ☐ 다들(다들)과 함께 속 더러워지는 우리 ☐ 장영(장영)을 잘 아는 우리 ※ 「교육노동법」 제 40조 제 2항 제 2호는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제공은 교육청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요청사항	기타 요청사항 기재	
입력자	성명																									
	전화번호	지역번호																								
	이메일	@ 이계할 선택 ☐																								
[직접 수신여부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																										
활용목적	☐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활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2022-02-01 ~ 2022-02-01																									
공동활용 콘텐츠 (중복선택가능)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인식의 길라잡이(심화버전) ☐ 다들(다들)과 함께 속 더러워지는 우리 ☐ 다들(다들)과 함께 속 더러워지는 우리 ☐ 장영(장영)을 잘 아는 우리 ※ 「교육노동법」 제 40조 제 2항 제 2호는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제공은 교육청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요청사항	기타 요청사항 기재																									

○ 공동활용 신청 가능 표준(정규) 교육 자료: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 신청방법: 실적관리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 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 → 교육자료 → 콘텐츠 공동활용 클릭

-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후, 교육자료 게시판의 콘텐츠 공동활용 클릭

※ 단, 콘텐츠공동활용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러닝시스템(온라인 교육 등) 내 탑재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그 외 단순 영상 시청은 자유롭게 신청 없이 활용 가능

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1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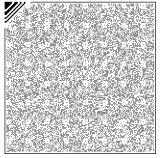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4장 참고자료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6-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제4장 참고자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7

각종 서식 *모든 서식은 참고로서, 기관 내 자체 양식의 사용도 무방함

1

교육 운영 계획서

교육 운영 계획서				
기관명:		작성일자:		작성자:
교육명				
교육일시		장소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방법	☐ 전문강사 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 일반강사 교육 ☐ 내부직원 교육 ☐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 일반 자료 활용 교육			
교육강사 (없으면 생략)	성명		주요이력	
	소속		장애여부	
주요 프로그램	☐ 강의 ☐ 캠페인 및 행사 등 단체 활동 ☐ 사이버 연수(이러닝센터) 활용 ☐ 감상형(콘서트, 영화, 인형극 등) 활동 ☐ 시청각 자료 활용 ☐ 체험형(장애인스포츠, 장애체험 등) 활동 ☐ 각종 교구(VR, 동화책, 보드게임 등) 활용 ☐ 기타 ()			
교육내용				
소요예산				
준비사항	*강사 요청 편의 제공, 건물 내외부 접근성 확인 등			
강의평가	☐ 만족도 조사(교육 만족도 조사지) ☐ 효과 조사(교육 효과 조사지) ☐ 기타 ()			
첨부자료	강의 계획서(강사 제공)			
비고				

2 교육 증빙자료(참여자 명단)

※ 단체 집합교육 관련 참여자 명단

교육 참여자 명단			
교육일자	2023. . .	교육장소	
교육과정명(강의명)		교육강사명	

[illegible]

4 교육 증빙자료(교육사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진 상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필수

- 교육사진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용량을 고려하여 활용하시길 바람

교육사진			
교육일자	2023. . .	장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5 교육 증빙자료(온라인교육 이수자 명단)

※ 온라인(사이버) 교육 관련 이수자 명단

- 개별 이수증(수료증) 원본은 기관 내 자체 보관하시어, 실적 점검(현장) 시 활용하시길 바람

온라인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기간

2023. . . ~ 2023. . .

[illegible]

6 교육 만족도 조사지

※ 아래 문서는 예시로서, 교육내용별 적합한 만족도 조사지 양식의 사용을 권장함

교육 만족도 조사지

강사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내용						
1	교육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3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4	교육방법이 흥미를 유발하고, 사례나 예시 등이 적절히 사용되어 집중도를 높였다.					
5	교육생의 이해도 및 소속 기관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였다					
6	교육 진행시 시간 배분(전달내용의 조직화, 설명, 토론)은 적절하였다.					
7	교육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은 적절하였다.					
8	강의 방식(속도, 언어 구사, 음량, 제스처)은 적절하였다.					

강의 주제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내용						
1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2	나에게 새로운 개념과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3	나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4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내용						
1	교육 운영(일정, 교육 준비 등)이 잘 준비되었다.					
2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교육생 인원은 교육 효과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규모였다.					

기타	
본 교육과정 운영 사항 관련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또는 차년도 과정을 위한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7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 아래 문서는 예시로서, 교육내용별 적합한 효과 조사지 양식의 사용을 권장함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교육 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내용						
1	장애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					
2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언어표현에 대해 알고 있다.					
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4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알고 있다.					
6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					
7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을 알고 있다.					
9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있다.					
10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교육 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문내용						
1	장애의 개념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2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언어표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4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5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6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7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8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9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다.					
10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8 장애인식개선교육 브랜드·캐릭터



각각의 다양한 <퍼즐>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형상을 만들 듯 서로 달라 보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주잡은 손처럼 함께 성장하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교육' 캐릭터인 '코코'와 '디디'는 효과적인 대국민 인식개선교육의 홍보를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코코



디디

“ 토끼는 빠르고 꺾이 많다?!
거북이는 느리고 성실하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토끼지만 느릿느릿하고
매번 당근을 선물 받지만
사실은 당근을 싫어하는
고기 덕후 집순이 코코!

직접 만든 전동 등껍질을
쌍쌍 타고 다니며
불편한 환경은 스스로
해결하는 행동파 디디!



‘장애인’하면 휠체어, 흰 지팡이만 떠올리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를 바꾸볼까요?

진정한 ‘장애인식개선’이 무엇인지
코코와 디디가 알려드릴게요~

9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 기준표(요약)

구분	기관유형	기관별 선별기준 및 확인 경로	비고
유형 A	국가기관	(대한민국 정부) https://www.korea.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s://www.code.go.kr • 코드검색 > 기관코드 체크 > 기관명 검색	(대상)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기준 3차 단위까지 분류 ※ 단, 각 부처별 보고 단위는 상이할 수 있음
	행정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리스트 조회	(대상) 광역 시·도, 시·군·구, 행정시 ※ 단, 자치구가 아닌 구는 시로 교육실적 보고, 읍·면·동은 상위, 시·군·구로 교육실적 보고(상위 시·군·구에서 일괄 취합 후, 제출)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https://nfa.go.kr • 정보공개 > 주요통계 > 소방청 통계연보 > 리스트 조회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조직과 기능 > 시·도소방본부 홈페이지	(대상)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교육청	(교육부) https://www.moe.go.kr 정책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 리스트 조회 • 교육부 소개 > 일반현황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대상)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알리오) https://www.alio.go.kr • 알리오 안내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공공기관 지정현황 보도자료 > 리스트 조회	부설기관의 경우, 상위 본부로 교육실적 보고 (본부에서 일괄 취합 후, 제출)
	지방공사 및공단	(클린아이) http://www.cleaneve.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공기업제도운영 > 지방공기업 현황 > 리스트 조회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등 제외)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제외
유형 B	특수법인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1항에 의한 총 6개 기관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초·중·고등학교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 알리미 소식 > 공개용 데이터 > 학사/학생 선택 > 학교 현황 > 공시년도/학교급 선택 > 리스트 조회	본교 및 부설병설통신학교의 경우, 본교로 교육실적 보고 (본교에서 일괄 취합 후, 제출)
	특수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교육통계연보	※ 단, 초등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의 실적 취합하여 제출
	각종학교	(대학교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개시편 > 자료실 > 학교 개황 리스트 > 리스트 조회	부설대학원, 제2·3캠퍼스의 경우, 본교로 교육실적 보고(본교에서 일괄 취합 후, 제출)
	대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교육통계연보	※ 단, 평생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대상 학교는 제외 (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위에서 입력)
유형 C	어린이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 보육정보공개API > OPEN API > 어린이집 기본장보 > 어린이집지역 선택 > 리스트 조회	2023년 10월 이후 설치기관의 경우, 교육실적 입력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교육 실시 대상임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자료실 > 공시자료 다운로드 > 시/도, 공시차수 선택 > 일반현황 > 리스트 조회	※ 단,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일괄 실적 취합하여 제출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발 행 일 2023년 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전 화 1522-0495

팩 스 02-412-0463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리드릭 (02)2269-1919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